

Q; 발코니 확장에 따른 대피소 공간을 보조주방과 겸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 보조주방의 출입문은 방화문으로 되어 있으나 주방 환기창을 PVC미서기 창호로 설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발코니의 대피 공간은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400호(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에서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갖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되어야 하므로, 보조주방과 겸해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발코니 확장 부위를 거실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스프링클러의 살수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발코니에는 자동화재탐지기를 설치하고 벽·천장 및 바닥의 내부 마감재로는 준불연재료 또는 불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Q; 발전플랜트 공사 시 가스터빈이나 스팀터빈이 설치되는 건물은 NFPA 220에 있는 Construction Type 중 어느 타입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NFPA 220은 구조유형(Type I, II, III, IV, V)에 따른 요구 내화도를 나타낸 것으로서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구조유형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구조유형 I, II는 구조부재가 불연성 및 준불연성 재료로 구성된 구조이며, 구조유형 III는 불연성 및 준불연성 재료에 일부 가연성 재료가 포함된 구조이고, 구조유형 IV, V는 대부분이 가연성 재료로 구성된 구조로서 발전소에 적용되어야 할 구조유형은 Type I, II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구조 유형은 미국의 IBC(International Building Code) 및 각 주의 Building Code에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발전소가 건설될 지역의 Code를 따라야 합니다.

국내 건축법에서는 발전소를 일반시설로 용도 구분하고 있어 발전소 건물의 일부인 터빈건물도 이에 따라 구분

되어야 할 것이며, 층수 및 최고높이에 따라 각 구조부의 요구 내화시간을 적용해야 합니다.(국토해양부(건설교통부)고시 제2005-122호 참조)

Q; 노피 시험이 무엇인지, 어디에 적용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캐노피 시험은 방화문 상부 및 좌, 우측에 불연재료의 벽체(캐노피)를 설치하여 방화문의 비가열면을 통한 복사온도를 측정하는 시험입니다.

• 캐노피 시험의 적용범위

캐노피 시험은 방화문 시험 시 의뢰자의 선택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험기관은 시험체 비가열면에서 화재로 인한 틈새 등 개구부의 발생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 캐노피 시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캐노피 시험방법

KS F 2268-1 '방화문의 내화시험방법' 부속서(캐노피 시험절차) 참조

Q; 보험설계 자문은 왜 필요합니까?

A 위험은 기업의 업종 및 규모 등에 따라 다양하지만 기업 활동과정에는 재물손해위험, 이익 상실위험 및 배상 책임손해위험이 크고 작은 형태로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보험이라는 경제적 수단을 통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은 자사에 내재된 위험유형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지 못한 채 보험에 가입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예산 낭비나, 사고 발생 시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선 잠재된 각종 손해위험의 종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분석 후 경영여건에 적합한 최적의 보험가입조건을 마련한 다음,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 코너는 방화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근거가 명시되지 아니한 답변은 관련 법률에 의한 공식적인 판단이 아니며, 견해를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소관부처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